

대학 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U-TECH 밸리) 구축 협약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와 기술보증기금은 아래와 같이 대학 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U-TECH 밸리)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협약당사자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범위) 협약참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각 대학은 대학 내 우수 연구 인력들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 기술창업 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한다.
2. 기술보증기금은 각 대학이 추천한 기술창업기업에 기술금융(보증·투자지원)과 비금융(컨설팅, IPO지원, 기술이전,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3. 협약 당사자들은 U-TECH 밸리 구축·운영과 이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약이행)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들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되, 협약 당사자가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 및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 당사자가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약 해지의 효력은 그러한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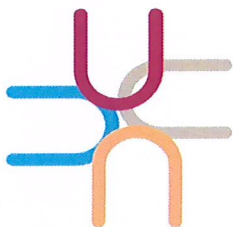
② 이 협약의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협약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이 협약의 해석, 이행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 기관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9. 23.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반 선 섭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변 창 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 정 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정 윤 모